금융위원회

의결 제2026-179호

1.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

제재대상	내용(회사명, 성명 등)
기 관	㈜아이케이파트너스

2. 조치내용

○ **(금감원 원안)**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'자본시장법')」 제34조 제2항에 따른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에 대하여 ㈜아이케이파트너스에 과징금 7,000,000원 부과

3. 조치이유

가. 지적사항

□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금전·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등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,

◦ ㈜아이케이파트너스는 20xx.xx.xx. 최대주주 甲(지분율 O%)의 특수관계인인 A사*에게 1,000만원을 대여**한 사실이 있음

* 甲이 A사의 지분 O%를 보유하고 있어 A사는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조 제1항 제1호 아목에 따라 甲의 특수관계인에 해당

** 대여기간 : 2개월(20xx.xx.xx. 원금 상환 및 20xx.xx.xx. 이자 상환), 이자율 : 연 O%, 대여목적 : A사 운영자금 지원

나. 근거법규

□ 「자본시장법」 제34조 제2항
□ 「자본시장법 시행령」 제38조 제1항